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3. 15.
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

과 장 : 강 인 구

서기관 : 조 일 환

전 화 : 500-2306

쪽 수 : 3P

별첨자료 : 있음(13P)

이 자료는 2010년 3월 1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비전 2020” 실현을 위한 수산분야 실행계획 마련

-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확정 -

-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“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”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.
- 동 대책은 “어업협정의 체결에 따른 어업인지원 특별법” 제 1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3차 대책은 2010~2014년을 대상으로 한다.
 - * 제1차 대책('00~'04)은 EEZ 시대 어업 구조조정, 제2차 대책('05~'09)은 FTA 등 개방화 시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둠
- “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”은 지난 2월 24일 발표된 “농림수산식품·농산어촌 비전 2020”의 수산분야 실행계획이며,
 - '0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“新 수산 30대 프로젝트”도 반영하였다.
- 제1·2차 대책과 구분되는 제3차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어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을 도모한다는 것(저탄소 녹색 시대 수산업 발전)이며,

○ 이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.

★ (정책수단) 정부 규제·지원 ⇒ 어업인 자율·자립

★ (자원관리) 획일적 ⇒ 지역별·해역별 맞춤형

★ (변화관리) 소극적·방어형 ⇒ 적극적·공세형

□ “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”의 비전은 “경쟁력 있는 수산업, 풍요로운 어촌”으로,

○ 2014년 수산물 생산 370만톤('08. 336만톤), 어가소득 3,800만원('08. 3,118만원), 수산물 수출 25억불('08. 14.5억불)을 목표로 한다.

□ “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”의 6대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어선 1,085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하고 7,000ha의 탄소 흡수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“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”
- ② 연근해어선을 13% 감축하고 연안 바다목장 50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자율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“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”
- ③ 외해양식장 19개소와 갯벌어업단지 7개소를 개발하고 친환경 인증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“친환경·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”
- ④ 38척의 원양어선을 신규건조하고 15개 연안국과의 MOU를 체결하며 수산물 수출 25억불 달성 등 “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”
- ⑤ 73개소의 수산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49개소의 다기능 수산물 유통시설을 조성하는 등 “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”

- ⑥ 매년 400여명의 후계 수산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어촌관광을 집중 육성하는 등 “어업인·어촌 활력 증진”

□ 계획기간 중 총 투융자 규모는 7조 96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(연평균 1조 4,192억원),

* 실제 투융자 규모는 매년 수립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짐

- 지구 온난화 시대 수산자원 조성을 전담할 전문조직과 해역별 어업지도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산 거버넌스를 개편하고,
-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및 수산업법 개정 등 6개의 법령을 제·개정할 계획이다. (제정 2, 개정 4)

□ 그 간 구조조정과 자원회복사업 등의 영향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참치 외해양식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발굴되는 등 수산업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바,

- 농림수산식품부는 “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”을 통해 수산업을 재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, 2014년 수산물 생산 세계 10위, 수출 20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.

* 2007년 우리나라는 수산물 생산 세계 13위, 수출 26위

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[요약]

1. 제 1·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평가

□ '99년 한·일 어업협정 체결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

-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“수산진흥종합대책” 수립

□ 제1·2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·시행

- 제1차('00~'04) : 신 해양질서 시대 수산업 개편

- 한·일('99) 및 한·중 어업협정('01) 체결로 연근해 어장 축소
⇒ 어선 감척, EEZ 어업관리, TAC 및 자율관리어업 등에 중점

- 제2차('05~'09) : 개방화 시대 수산업 경쟁력 강화

- WTO/DDA 출범('01), FTA 확산 등 시장개방에 따른 위기감
⇒ WTO/FTA 국내대책, 어촌개발,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

□ 자원 회복, 어획량 증대, 소득 증대 등 가시적 성과 도출

- 연근해 수산자원은 '02년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

* 수산자원량 : ('90) 835만톤 → ('00) 790만톤 → ('08) 835만톤

- 어업 생산액은 10년간 47% 증가('99. 4조3,200 → '08. 6조3,450억원)

- 어업 생산량은 10년간 16% 증가('99. 219 → '08. 336만톤)

- 근해어업은 어선세력을 36%(5,937척 중 2,165척)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96% 수준 유지

- 양식어업은 생산량 1.8배 증가, 넙치·전복산업 등 비약적 발전

- 어가호당 소득은 69.2% 증가('99. 1,843 → '08. 3,118만원)

- 자율관리어업, 총허용어획량(TAC) 등 선진 어업관리 정착

2. 대내외 여건변화

□ 지구 온난화와 저탄소 녹색시대로의 진입

-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(기온 상승은 2배, 해수면 상승은 3배)하여 수산자원을 비롯한 생태계 교란 심각
 -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어업 현실을 수용하기 어려움
- 우리 연근해어업은 고탄소 산업(수산물 1kg 생산에 유류 0.66ℓ 사용)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

□ 수산물 수요는 증대하나 생산은 한계

-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수산물 공급량은 57% 증가('98. 35kg → '07. 55kg)하여 육류 17%, 과일류 29%에 비해 높은 증가율
 - 중국의 수산물 소비도 급증('00. 11kg/인 → '06. 22kg/인)
- 수산자원량에 비해 아직 어선세력이 과도(7% 추가감축 필요)하고, 양식어업도 어장오염, 개발적지 부족 등으로 생산 증대에 한계
 - 원양어업은 어선 노후와 국제규제 강화로 생산량 감소 추세

□ 유가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어업 채산성 악화

- 최근 4년간 어가소득은 19% 증가했으나, 어업경영비는 49% 증가
 - * 소득 : ('04) 2,616 → ('08) 3,118만원, 경영비 : ('04) 1,319 → ('08) 1,966만원
- 보건의료시설 접근에 농촌의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촌의 정주여건은 여전히 열악

◆ 어업인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규제 위주의 행정을 자율 기반 맞춤형 행정으로 전환 필요

◆ 국내 수산물 소비 증가와 대중국 수출 확대에 대비해 안정적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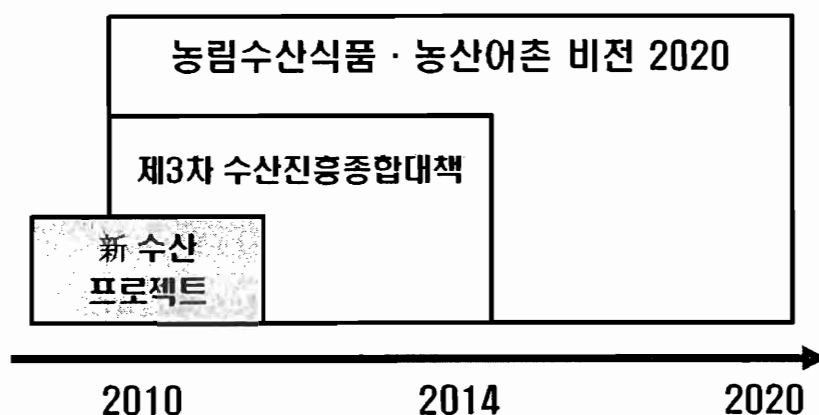
◆ 저탄소 녹색성장과 비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사용 감축 필요

3. 수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
정책수단	정부 규제 · 지원 ⇒ 어업인 자율 · 자립 - 정부 규제를 통한 통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가 있으며, 과도한 정부지원은 어업인의 자생력을 약화 - 어업인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립능력도 강화
자원관리	획일적 ⇒ 지역별 · 해역별 맞춤형 -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로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급변하는 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- 지역별 · 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자원관리로 고질적 어업분쟁을 해소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
변화관리	소극적 · 방어형 ⇒ 적극적 · 공세형 -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(명태 고갈)보다는 기회(참치 출현)를 주목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 - 대중국 수입 증대를 우려하기보다는 대중국 수출 확대 추진

4. 타 계획과의 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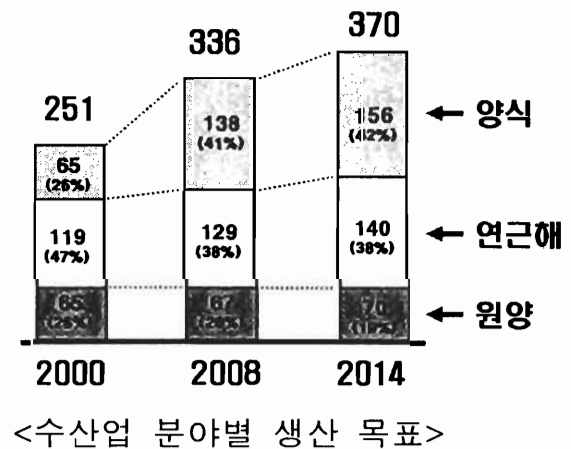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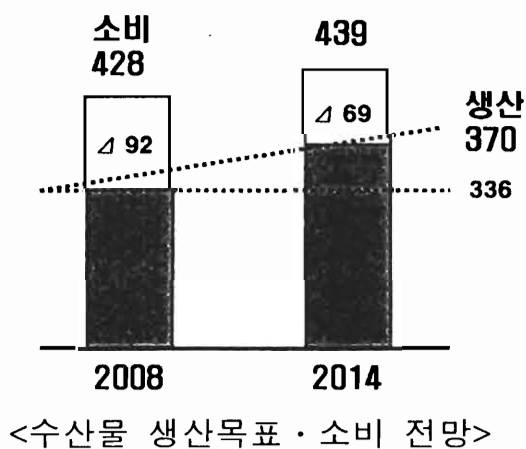
- “농림수산물 · 농산어촌 비전 2020” 및 “新 수산 프로젝트”와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



5. 비전,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

비 전	경쟁력 있는 수산업, 풍요로운 어촌
목 표	수산물 생산 세계 10위, 수출 20위 ('07. 생산 13위 수출 26위)
주 요 지 표	■ 생 산 량 : (08) 336만톤 → (14) 370만톤 ■ 어가소득 : (08) 3,118만원 → (14) 3,800만원 ■ 수 출 액 : (08) 14.5억불 → (14) 25억불
중 점 추 진 과 제	■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■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■ 친환경 ·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■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■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■ 어업인 · 어촌 활력 증진

[수산물 생산 목표]



6. 업종별 생산성 향상 목표 및 구조조정 방안

〈 '14년 생산목표 370만톤 = 연근해 140, 양식 156, 원양 70 〉

□ 연근해어업 : 129만톤('08) ⇒ 140만톤('14)

○ 어선척수는 줄이고 수산자원량은 늘려서 척당 생산량 24% 증대

	2008	2014	증감률	주요정책
연근해 생산량	129만톤	140만톤	8.5%	- 어업 구조조정 촉진 - 맞춤형 수산자원관리 - 자율관리어업 확산 - 유류비 등 비용 절감
연근해 어선수	57,183척	50,000척	-12.6%	
수산자원량	835만톤	900만톤	7.8%	
척당 생산량	22.5톤	28.0톤	24.4%	

□ 양식산업 : 138만톤('08) ⇒ 156만톤('14)

○ 신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친환경 촉진으로 ha당 생산량 19% 증대

	2008	2014	증감률	주요정책
양식 생산량	138만톤	156만톤	13.0%	- 외해양식 활성화 -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- 불법양식어업 근절
양식장 면적	13.6만ha	13만ha	-4.4%	
ha당 생산량	10.1톤	12.0톤	18.8%	

□ 원양산업 : 66만톤('08) ⇒ 70만톤('14)

○ 원양 인프라 강화 및 국제협력 강화로 척당 생산량 15% 증대

	2008	2014	증감률	주요정책
원양 생산량	66만톤	70만톤	6.1%	- 원양어선 신조대체 - 연안국 협력 강화 - 해외 수산투자 촉진
원양어선 척수	380척	350척	-7.9%	
척당 생산량	1,736톤	2,000톤	15.2%	

7. 중점과제 추진계획



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

□ 연근해어업 탄소 배출량 감축

- 탄소 배출이 많은 저효율 어선기관을 대체('14년까지 279천마력)
- '13년까지 1,085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
 - * 집어등 사용 어선은 전체 유류사용량 중 65%를 전력 생산에 사용
- 수산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,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을 우선 감축 추진
-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여 어류 산란서식장, 탄소 흡수,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다용도 활용

□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

- 양식장 배출수 폐열회수장치(히터펌프) 보급, 지하해수 개발 등 에너지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가온비 절감
-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,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등 양식산업과 전력산업의 융복합화
- 벼농사+참게 등 내수면어업과 농업의 결합으로 에너지와 자원 투입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농수산물 생산

□ 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 촉진

-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나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대체
- 수산 부산물 리사이클링 활성화 등 수산 가공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방안 강구

□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촉진

- “어업구조조정특별법”을 제정하여 유류소비가 많거나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점 감척하고, 업계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
 - 5만7천척의 연근해 어선을 5만척 수준으로 감축
- 고탄소·노후 어선을 저탄소·복지 어선으로 대체하여 어업비용 절감 및 어선원 복지 증진

□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

- '14년 수산자원 900만톤을 목표로(현 835만톤)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 등 수산자원 관리체계 강화
- '14년까지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를 1,400개로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, 자율관리방식을 수산정책 전반에 적용
-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별·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를 확대
- TAC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ITQ 단계적 도입 검토
- 오염이 심한 어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여 어장청소 및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추진

□ 동북아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체계 구축

- 현행 2개 어업지도사무소를 동·서·남해 3개 해역별 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맞춤형 어업관리를 지원하고 대어민 서비스 확대
- 한·일, 한·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3국간 어업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수산협력사업도 강화

□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

- 어장오염 및 공급과잉 등을 유발하는 불법양식어업 강력 단속
 - 양식어구 실명제, 폐양식어구 처분권제도 도입 및 인공위성 활용 양식장 관리시스템 구축
- 친환경 인증 수산물 품목 확대
 - '08년 7개(넙치, 무지개송어, 굴, 홍합, 김, 미역, 톳) → '14년 20개
-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율을 상향하고 배합사료 구매자금 특별융자로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 확대

□ 고부가가치 신 성장동력 발굴

- 외해양식 촉진으로 국토의 2.9배인 EEZ를 바다목장으로 개발
 -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먼 바다에 설치한 대규모 수중 가두리에서 기업형으로 양식 ('12년까지 외해양식장 15개소 개발)
 - 내만가두리의 30%(352ha)를 외해로 이설 추진
- 세계 5대 갯벌인 서·남해안 갯벌을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고 굴, 해삼 등 수출전략품목 개발
- 고부가가치 지역특산 품종 개발 및 특화 브랜드화 (동해 참가리비, 서해 황복, 남해 고등어 등)
- 논 + 미꾸라지, 참게 등 농수산 융합형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

□ 양식수산물 수급안정체계 개선

- 수산물 관측사업 대상품목을 '16년까지 12개로 확대
- 넙치, 전복, 김 대표조직을 집중 육성하고 자조금 사업을 확대하여 생산 및 수급조절의 중추기능 수행

□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

- '16년까지 총 38척의 원양어선을 신규 건조하여 어선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방지 (평균 선령 26년 → 20년으로 개선)
- 국제기구 관할수역에 대한 신규허가와 제3국적선의 국적선 전환으로 원양어업세력 확장
- FTA 등 시장개방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구조조정 실시

□ 안정적 해외 수산자원 확보기반 마련

- 우리나라가 연 28만톤의 참치를 어획하는 태평양 도서국가(PNA 8개국)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참치자원 지속적 확보
- 러시아 연해주 어선조선소 및 수산물 유통시설(냉동공장 등) 참여로 한·러간 교류 확대 등 해외수산투자 활성화
- 개도국과의 어업교류 촉진을 위한 “국제어업 교류센터” 설립 추진
- 인도네시아에 톳 등 해조류 대량 양식 및 펄프 생산시설을 구축해 차세대 세계 펄프시장(3~5조원 추정) 선점
- 해외양식어업, 가공공장 등 민관합동 펀드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

□ 수산물 수출기반 강화

-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역거점 인프라 확충
 - '14년까지 수출용 패류(전복) 및 넙치 물류센터 2개소 건립
- 해외시장 수출수요의 지속적 파악 및 해외마케팅 다변화
 - 전복, 해삼, 참치 등 중국시장을 겨냥한 상품개발 및 홍보 강화
- EU의 IUU 어업 근절조치 이행을 위해 국산 수산물에 대한 CDS(Catch Document System) 구축

□ 수산 가공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

-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생산·가공·유통산업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물류비 등 비용 절감
 - 경북 과메기, 전북 풍천장어, 완도 전복 등 우선 추진
-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, 국제 수산물거래소, one-stop 수산물 수출단지 등을 연계하여 동북아 수산물 물류가공 허브로 육성

□ 수산물 시장유통 인프라 강화

- 노량진, 가락 등 전국 18개 수산물 도매시장을 리모델링, 현대화형, 기능전환형으로 분류하여 시설 개보수
- 씨푸드 타운 및 유통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저온유통 시스템을 갖춘 위판장 구축
- 문화, 관광 시설과 연계한 Korea Seafood Landmark 조성

□ 수산물 수급관리체계 강화

- 국내외 수산물 생산·유통·가격·수출입 등 수급정보를 통합관리 하는 “수산물 수급정책 총괄시스템” 구축(’14년)
 - 양식어업 위주의 수산물관측사업을 어선어업 품목까지 확대
- 학교급식, 군납 등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

□ 수산식품 안전관리 강화

- 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수산물 생산단계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
 - ’11년부터 전 해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위생등급 설정
- HACCP를 어선, 어획물 양륙장, 건조장 등으로 확대

□ 창조적 수산경영주체 육성

-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한국 농수산대학을 수산정예인력의 요람으로 육성
- 매년 어업인후계자, 전업경영인, 선도우수경영인 400여명을 선발하여 '15년까지 후계 수산업경영인 20,000명 달성

□ 어가 경영안전망 구축

- '1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목표로 도입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('11~'12년)
 - 어가단위 소득 안정제는 '13년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추진
- 어선원·어선재해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수립·추진
-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을 '12년까지 20% 수준으로 제고

□ 어촌 복지서비스 향상

- 어업활동 관련 “어부증” 범위 구체화 및 의료비 지원방안 추진
-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서비스를 취약어촌지역 전체(310개 어촌계, 60개소)로 확대하고, '12년까지 15개 양식장비 임대사업소 운영
- 수도권 대학의 어촌학생에 대한 정원의 특별전형 확대 추진

□ 어촌·어항 개발사업 다변화

- 미완공 어항 집중투자로 어항완공률 제고('09. 38% → '13. 51%)
- '13년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된 노후 국가어항 46개항 중 27개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, 다기능어항 13개 중 미완공 9개항 완공

8. 재정지원 계획

□ 재정지원 규모

- 계획기간 중 총 투융자 규모는 7조 961억원 (평균 1조4,192억원/년)
 - * '10년은 확정, '11~'13년은 국가재정 운용계획('09~'13), '14년은 '10~'13년 평균증가율 1.9%를 적용하여 추정
 - * 실제 규모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계획('10~'14) 및 해당연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

단위 : 억원

계	2010	2011	2012	2013	2014
56,282	13,880	13,878	14,383	14,403	14,679

□ 재정지원 방향

-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의 도래, WTO/DDA 수산보조금 협상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재정지원 방향 조정
- 증대시킬 분야
 - 수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필요하나 DDA 타결 이후에는 지원이 어려운 사업 (어선 건조 등, DDA 타결시까지 한시적 지원)
 - 저탄소 녹색 성장 촉진 (유류절감 장비 개발·보급, 저탄소 기술 개발, 바다숲 등 탄소 흡수원 조성 등)
 - 신 성장동력 육성 /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
 - 경영 안전망 구축 (어선원 및 어선 보험, 직불제 등) 등
-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분야
 - 수협 경영정상화 지원 (한시적 지원)
 - 수산물 수출 선진화단지 지원 등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사업 등
- WTO/DDA 협상 결과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워 질 경우 간접지원으로 전환

9. 정책 지원체계의 구축

□ 수산 거버넌스 개편

-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어장환경에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“수산자원 조성·관리 전문조직” 설립
 - 인공어초, 바다 숲 및 바다목장 조성, 종묘방류 등 전담
 - '10년 9월 출범을 목표로 법적근거 마련, 준비위원회 구성 등 추진
- 현행 동·서해 어업지도 체계를 동·서·남해 “해역별 어업지도 사무소” 체계로 확대 개편
 - 지역별·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, 연안어업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등 새로운 수산정책을 지원하고 대어민 서비스 기능 강화
- 수협이 어업인을 위한 자율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협법을 개정하고 고강도 구조조정 등 “新 수협운동” 추진
 - 중앙회 조직·인력 감축, 부실사업장 폐쇄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,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및 부실수협 통폐합 추진

□ 법률 제·개정

- 어업구조조정 특별법(제정)
 - 주변국과의 어업협정, IUU 협정 및 FTA 체결 등으로 영향 받는 업종에 대한 특별감척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 감척제도 도입
- 낚시관리 및 육성법(제정)
 - 유해 낚시도구의 금지, 낚시터업의 허가·등록제도 등을 정하여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국민레저활동으로 육성
- 수산업법(개정)
 - 지역별·해역별 맞춤형 어업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업 허가 일제정비 도입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
- 수산자원관리법(개정)
 - 수산자원 조성·관리 전문조직의 법적근거 마련